
제4차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 유럽GDPR을 중심으로

이상직변호사

제4차산업혁명

1.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 세계경제포럼 주관(슈바프 설립, 유럽 미국 중심 1,200개 기업 단체 가입)
- 매년 세계 각국 정재계 유력 인사 참가
- 글로벌 이슈 이니셔티브(등대 역할), 글로벌 프레임의 결정
- 2016년 주제가 제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에 대한 언급도 있음)

2. 제4차산업혁명의 정의

-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 야기
- 인공지능 등이 기존 산업, 서비스와 융합
- 초연결, 초지능 융합사회 건설
- 1차(증기기관), 2차(컨베이어벨트에 의한 대량 제조), 3차(정보통신을 통한 자동화, 정보화)

3. 제4차산업혁명의 성공요인

- 기술발전의 동인: 1)업무, 생활의 편리성 등 수요창출, 2) 인건비 등 비용절감
- 무규제 또는 규제완화
- 금융: 기술 및 서비스 발굴을 위한 자원 대여, 투자
- 정부 지원책

참고: 영국산업혁명

1. 당시 환경

- 유럽 변방의 섬나라, 후진국, 정치적 고립
- 유럽 대륙 의존형 경제
- 목축업 중심:
양모를 생산하여 유럽에 공급하면 유럽이 섬유를 만들어 영국에 역 판매

2. 성공 배경

- 신교 박해를 피해 건너온 기술자
- 신교 박해를 피해 건너온 금융업자(유대인 등)
- 양모산업 활성화에 따른 인건비 증가
- 당시 후진국이어서 규제가 전무한 상황

3. 산업혁명의 경과

-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기술자를 활용해 증기기관을 발명하여 생산과 유통(운송)의 혁신
- 기술개발 등 투자재원은 금융업자가 담당
- 양모산업에서 모직산업 등 신산업으로 산업구조 변화
- 근로환경 등 복지 문제

참고: 미국 금융위기의 극복과 제4차산업혁명

1. 배경

-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 제조업 등 현물시장을 도외시 하고 금융서비스(파생상품)를 팽창시킨 결과

2. 극복요인

- 첨단산업(애플, 구글, 테슬라 등의 신제품 및 파급효과)
- off shoring 에서 reshoring으로
- 셰일가스, 셰일원유 개발로 에너지강국(러시아, 중동, 남미 산유국의 약세)
- 연방, 주정부의 지원
- 벤처캐피탈

3. 경과

- 완전고용에 가까운 일자리창출
- 제4차산업혁명 주도

4. 제4차산업과 해외진출

- 제4차산업은 필연적으로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이용을 수반
- 미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해외국가 국민의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간 마찰

개인정보에 관한 최근 해외 경향

1. 미국, 유럽의 오래된 갈등

- 구글 독과점 등 유럽시장의 미국 글로벌 IT 기업 독세
- 유럽의 견제
- 유럽에서 미국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과징금
- 구글 검색서비스에서의 잊혀질 권리 인정(스페인 곤잘레스 사건)
- 최근 구글 애널리틱스 이슈

2. 유럽 개인정보의 미국 등 국외 이전 문제

- Safe Harbor 정책
- Privacy shield
- 적정성 평가

3. 개인정보의 정의와 기술적 안전조치

<유럽의 논의>

- 익명정보: 식별성 제거
- 가명정보: 식별성의 100% 제거는 어렵지만, 다른 정보와 분리 차단 조치 후 활용 개방
- 비식별조치

<미국의 관점>

- 소비자의 권리. 개별 분야별 접근, 식별자 제거

4. 유럽 GDPR의 2018년 시행

- 동의 외의 다양한 개인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허용(공익 등)
- 목적외 이용의 완화(수집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 역외 적용, 외국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 대리인
- 잊혀질 권리
- 가명정보의 연구 통계 목적 활용 완화
- 자동화된 처리(프로파일링)
- 정보주체의 정보이동권
- 개인정보 중심 디자인

5. 미국 정부의 교체

- 미국의 프라이버시는 전통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 보호 이슈
- 미국은 전통적으로 개인정보가 소비자 권리의 일종으로 독자적인 별도 영역 아님(공정위 소관)
- 오바마정부
- 트럼프정부(구글 등과의 갈등, 도메스틱 중심의 접근, 기업가적 접근, 미국 우선주의)
-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논의가 국가기술표준원, FTC, 국가정보통신국, 국토안보부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원론적 수준(프라이버스 보호와 경영혁신 모두 고려)

6. 한국의 선택

- 개인정보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이용과 신뢰성 있는 보호체계 확립
- 기존의 촘촘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규제샌드박스 등)
- 정부, 사업자 중심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 주무 행정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글로벌 선택
- 국내 시장을 만들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 2단계 산업 발전 모형
- 개인정보(또는 빅데이터) 활용 기회 입법이 국내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글로벌 해외기업에만 득이 되는 것은 아닌지(정교한 개방정책의 요구)
- 규제의 역차별 이슈

GDPR 제정경과

- EU의회는 EU회원국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 2016.4.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을 승인
 - 2018.5. 시행
 - **GDPR**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과 달리 '규정'으로서 EU 각 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있음

GDPR 주요내용

1. 사전동의 원칙 관련

- **(GDPR)** 적법한 개인정보처리 법적 근거로 동의 외에 다양한 근거를 허용
* 계약 이행, 법률상 의무준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에 관한 이익 보호, 공익 또는 공식권한 행사, 공공기관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한적으로 사전동의 예외* 인정
*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경제적·기술적 사유로 동의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법률 규정,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
- **(참고사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7.3월 국회 제출, 이하 동일)에 ①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②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급박한 생명·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하여 논의중

GDPR 주요내용

2. 목적제한 관련

- **(GDPR)**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면서도 원래 수집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이용·제공은 목적외 이용으로 보지 않아 변경동의를 요구하지 않음
- **(정보통신망법)** 목적, 항목, 보유기간 중 하나라도 변경이 있으면 변경동의를 받아야 함
- **(개선방안)**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더라도,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은 목적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 필요
- **(참고사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종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능이 추가되는 정보통신서비스 개선은 목적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반영하였음
- 그러나, 위 개정안은 GDPR과 달리 기능이 추가되는 서비스 개선만 규정하여 GDPR보다 훨씬 좁게 목적 변경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범위 확대를 검토 필요

3. 역외조항

- **(GDPR)** 유럽연합 밖에 설립한 사업자에 의한 유럽연합 내에 거주하는 개인 정보주체에 대한 처리의 경우에도 GDPR 적용
- **(정보통신망법)**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정보통신망법은 적용대상을 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판례도 효과이론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 역외규정 유무와 상관없이 외국사업자의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음
 - ※ 방통위는 국외사업자인 구글본사에 대해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여 과징금(2.1억원) 및 시정명령 부과('14.1월)
- **(참고사항)** 국가 간 협조를 통한 관련 법제 통일(또는 공통 규제기준 마련) 및 집행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역외적용 규정 유무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규제 필요성, 현행법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국가간 분쟁가능성 및 현실적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외규정 신설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4. 잊힐 권리(삭제권) 관련

- **(GDPR)** 개인정보 처리근거가 소멸되거나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권 인정
 - 다만,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 과학·역사연구·통계 등의 목적 달성이 심각하게 어려운 경우 등 적용 배제사유 규정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동의 철회 등의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삭제 등 요청('임시조치')을 할 수 있음
 - ※ 개인정보보호법은 권리침해가 없어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우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적용 배제사유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을 규정
- **(참고사항)** GDPR이 규정한 삭제권은 정보통신망법에 이미 대부분 규정되어 있고,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 시행('16.4월) 중이므로 추가적인 법제화는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5. 수정·삭제·처리제한에 관한 고지 의무

- **(GDPR)**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정·삭제·처리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각각의 수령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 통지가 불가능 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 예외
- **(정보통신망법)** 이용자의 동의철회·정정·열람 청구권 효과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만 미침
- **(개선방안)** 이용자의 요구를 각 수령인에게 통보하는 방안은 사업자 비용 부담과 수령인들의 이행에 관한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 검토 필요
- **(참고사항)** 개인정보를 재제공받은 경우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측면과 사업자의 비용부담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GDPR 주요내용

6. 처리 제한권 관련

- **(GDPR)** 정보의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처리가 위법한 경우 등의 경우에 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법)** 관련 규정 없음
 - **(참고사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용자가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되, 사업자는 일정한 경우* 거절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법률 규정,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

GDPR 주요내용

7. 민감정보 관련

○ **(GDPR)** 원칙적으로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건강 관련 정보 등 민감 정보 처리를 금지하면서,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 방어권 행사, 공개된 개인정보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 **(정보통신망법)** 사상·신념·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동의나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 외에는 금지

- 또한, 바이오 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

○ **(참고사항)**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반 운영을 통해 생체정보(바이오정보) 등의 추가적인 보호조치 방안을 검토

8. 비식별화 관련

- **(GDPR)** 가명화*를 비식별화를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명시하고 가명화된 정보는 공공기록 보존, 과학·역사 연구, 통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여전히 개인정보이므로 보호조치 필요
*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된 개인정보의 처리(GDPR 제4조)
- **(정보통신망법)** 비식별화나 가명화 관련 명시적 규정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은 통계·학술 등의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의 예외 규정으로 명시
- **(개선방안)** 가명화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보호 조치를 법규정에 명시하는 방식 필요
- **(참고사항)** 범부처 통합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나, 비식별화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이므로 비식별화 관련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9. 자동화된 처리(프로파일링 등) 관련

○ **(GDPR)** 프로파일링* 개념(개인정보 자동처리 형태) 정의, 정보주체에게 프로파일링 처리 필요성 및 처리 후 예상 결과 등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프로파일링을 받지 않을 권리 명시

* 개인의 특정한 측면(업무능력, 건강, 관심사, 행동, 위치 등)을 분석 및 예측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자동처리 형태

○ **(정보통신망법)**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 **(개선방안)** 맞춤형 광고 등 프로파일링과 관련한 규제 문제(개념 정의 등)가 점차 부각될 것이므로 개별 규정이 필요

○ **(참고사항)**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17.7월 시행 예정)을 제정하였으나,

- 행태정보를 이용한 프로파일링이 맞춤형 광고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제 신설 검토 필요

10. 보호 조치 관련

- **(GDPR)** 감독기관이 승인한 행동강령 또는 공식 인증메커니즘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안전성 조치의무를 이행한 증거로 이용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를 운영하고 인증을 받은 경우 관련 고시에서 과징금 감경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호조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의무이행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사항)** 인증 취득한 것만으로 보호조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사업자의 관리소홀 등이 우려되므로 과징금 감경 사유 이외에 인증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GDPR 주요내용

11. 정보이전권 관련

- **(GDPR)** 자동화된 수단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의 정보관리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전시킬 권리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유사 규정 없음
- **(참고사항)** 이전권의 실질적 필요성 여부와 동의철회권, 처리제한권, 삭제권 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12. 국외이전 관련

- **(GDPR)**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평가를 받거나, 관할 감독기관이 승인한 구속적 기업규칙이나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정보보호표준조항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에 국외이전이 가능
 -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정보주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한 후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국외이전 허용
- **(정보통신망법)** 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감독기관 등의 적절성 판정 절차 없이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보호조치를 취하여 이전 가능
 -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 계약내용 등에 보호조치 사항을 반영해야 함
- **(개선방안)** 정보통신망법은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나 GDPR의 적합성 평가제도와 같이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참고사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PIMS 등 방통위가 지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등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할 수 있는 경우로 추가하고, 동의 없이 국외 이전 시에도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13. 재이전 관련

- (GDPR) 국외이전과 동일 기준으로 허용
- (정보통신망법) 구체적인 규정 없음
- (개선방안) 국외이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사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미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를 재이전하는 경우도 국외이전과 동일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14. 개인정보 처리자 관련

- **(GDPR)**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공동정보 처리자'가 되고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
 - 역외조항이 적용되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명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법)** 2개 이상의 정보처리자가 공동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처리위탁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
 -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사업자는 임원 또는 부서장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참고사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처리위탁 이외에 '공동처리'의 개념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
 - 또한, 해외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해외 거주자나 외국인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15.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 **(GDPR)**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중대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의무화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보충 적용에 따라 공공기관에만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은 권고사항임
- **(참고사항)** 개인정보 침해요인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대규모 처리나 새로운 기술의 적용 등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16. 개인정보보호 중심 디자인 관련

- **(GDPR)** 시스템 최초 설계 시점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도록 하고(data protection by design), 기본 설정으로 필요한 목적 하에서만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data protection by default)고 제시
- **(정보통신망법)**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단말기 제조사 등에게 앱 접근권한 동의 및 철회방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17.3월 시행)
- **(참고사항)** GDPR상 원칙에 비추어 현행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품생산 및 서비스의 전반에서 포괄적인 정보관리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검토 1. 비식별조치

□ 검토배경

- 향후 수십년간 세계경제는 데이터가 경제성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data economy 시대 또는 데이터 기술(data technology)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정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 기술 및 융합 신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조화를 목적으로 2016. 6.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공개함
- 그러나 비식별 정보의 활용만으로는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의 도래에 대응이 어렵고, 현재의 엄격한 사전 동의 제도는 디지털 경제의 선두가 되기는커녕 따라잡기 어려움
- 따라서 데이터기술 시대에 대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다 안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유용한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개정방향

- 별도 보관되어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고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정보(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개발, 시장조사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 허용
- 다만, 가명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하여 가명정보의 생성 및 이용·제공 사실 공개, 가명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제공, 재식별 시도 금지, 재식별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함

검토 2. 온라인 트래킹, 프로파일링

□ 검토배경

- 기술 발달로 쿠키, 웹비콘, 플래시 쿠키, 디지털 핑거프린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온라인 트래킹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온라인 트래킹을 이용해 맞춤형 광고, 프로파일링 등에 활용되면서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개정방향

1. 온라인 식별자 수집시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 동의 면제
 - 온라인 식별자를 개인정보에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면제
 - 다만, 원활한 통신 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제한
2. 프로파일링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조항 신설
 - 프로파일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허용

검토 3. 국외 이전 및 역외적용

□ 검토배경

-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국제계약의 체결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행정규제에 불과하여 민사법적 계약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
- 국외이전을 규율하는 목적이 국내의 개인정보가 국내 개인정보보호수준과 상이한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에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내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보호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형태의 규율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행 규정은 그렇지 못함
-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동의를 받아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조치는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국외 이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에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다만, 너무 구체적이거나 특정 기술을 한정하여 보호조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무역장벽 혹은 국내외 차별규제가 될 것이므로 보호조치 수준에 대하여는 일반원칙에 따라 실질 보호수준의 확보와 비례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개정방향

- 국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

검토 4. 정보이동권 (right to data portability: RDP)

□ 검토배경

- 정보이동권은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그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정보처리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권리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주체의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정보처리자 간의 경쟁 촉진 및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개인정보의 유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권의 연장선에서 정보처리자에 대해 그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전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자로부터 그가 지정하는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직접 그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음

□ 개정방향

-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그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정보처리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전송 허용

검토 5.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 검토배경

-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의 온라인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일반화되고 그와 관련한 대한민국 국민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가 일반화 되고 있는 상황
- 국외 사업자의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법령 관련 조항이 적용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
-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대리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적어도 그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리인에게 각종 정보 보관 및 제출의무를 부과할 실익이 있음

□ 개정방향

- 외국인이 국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우리나라 이용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함

검토 6. 개인정보 보호 중심 디자인

□ 검토배경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더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 개발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그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방법, 새로운 형태의 기술적 구현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통신시스템에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방법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신규 서비스 개발, 기획, 관련 시스템 반영 단계부터 Data Protection by Design을 적용할 필요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2항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의 구현을 통하여 기본값에 해당하는 정보만 수집되도록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은 별개의 관점과 이슈이므로 Data Protection by Default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개정방향

- 정보통신서비스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설계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조치 의무를 부여함
- Data Protection by Design 실현은 그 선언조항 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제28조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와 연계하여 실효성을 확보

감사합니다
